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전북) 시행계획

I 신청방법 및 사업 담당 안내

■ 공고대상 사업

①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사업	4
②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사업	12
③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사업	20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기술이전 R&BD)	28
⑤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BM 연계형 R&BD)	41
⑥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연구소기업 R&BD)	54
⑦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사업	65
⑧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72
⑨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사업	80
⑩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89
⑪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97
⑫ 전통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 사업	106
⑬ 기술사업화기업 후속성장 지원 사업	115
⑭ 전북테크비즈센터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123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공고기간(2021. 3. 8.(월) ~ 2021. 5. 31.(월)) 및 사업별 접수기간

구분	사 업 명	접수기간
①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21.03.24.(수) 9:00 ~ 04.07.(수) 15:00
②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21.03.24.(수) 9:00 ~ 04.07.(수) 15:00
③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21.04.16.(금) 9:00 ~ 04.30.(금) 15:00
④~⑥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21.04.01.(목) 9:00 ~ 04.14.(수) 15:00
⑦	연구소기업 애로해결	'21.03.24.(수) 9:00 ~ 04.07.(수) 15:00
⑧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1차 접수마감 : 05.31(월) 15:00까지

구분	사 업 명	접수기간
⑨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21.03.24.(수) 9:00 ~ 04.07.(수) 15:00
⑩	액셀러레이팅 지원	'21.03.24.(수) 9:00 ~ 04.07.(수) 15:00
⑪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1차 접수마감 : 04.16(금) 15:00까지
⑫	전통기업 신사업 전환	수행기관 '21.03.24.(수) 9:00 ~ 04.07.(수) 15:00 수혜기업 '21.03.31.(수) 9:00 ~ 04.14.(수) 15:00
⑬	기술사업화 기업 후속성장	'21.03.24.(수) 9:00 ~ 04.07.(수) 15:00
⑭	전북테크비즈센터 교류협력공간 운영	'21.04.16.(금) 9:00 ~ 04.30.(금) 15:00

*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지원 사업 및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접수결과,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에 지원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각 사업별 접수기간 확인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접수절차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접 수 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팀

사 업 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②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③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③-① 지역성장 네트워크	이상민 선임연구원	063-905-9743	bestsm0227@innopolis.or.kr
③-②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④~⑥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⑦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7	ljk4002@innopolis.or.kr
⑧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⑨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7	ljk4002@innopolis.or.kr
⑩ 액셀러레이팅 지원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⑪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이상민 선임연구원	063-905-9743	bestsm0227@innopolis.or.kr
⑫ 전통기업 신사업 전환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⑬ 기술사업화 기업 후속성장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⑭ 전북TBC 교류협력공간 운영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7	ljk4002@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동법 시행령,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장중심 유망기술 발굴, 기술마케팅 및 BM 수립·개발을 지원하여 우수 공공기술의 수요기업 연계 및 이전·출자 활성화

□ 사업내용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기업) 간 시장중심 기술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유망기술 발굴, 기술마케팅, 기업수요 매칭, BM 개발 등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30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최대 150백만원 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업화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법인
- ③ 특허법인 또는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법인(기술거래기관 이외의 민간법인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3건 이상 보유)

④ 산업자원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명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

** 참여율 100%인 전담인력이 최소 1명 이상, 연구책임자 참여율은 50%이상 이어야 함

* 선정되는 기관은 전북특구본부 기술이전업무 지원을 위한 현지(전북지역) 업무 협력 등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북특구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확보된 기업수요를 분석하여 사업화 목적에 적합한 BM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21년도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 (공공기술 발굴) 전북특구본부와 함께 공급기술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전북지역 주요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발굴 전담

* 지역내 이전·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술 전수조사 → 기업통계 분석 및 매칭 등
 ** 유망기술DB 기반으로 기술마케팅, 수요발굴, 사업화연계를 지원하는 기술매칭플랫폼 운영

- (기술매칭·이전) 발굴된 유망기술을 선별하고 특구내·외 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기술매칭·이전·출자 추진 및 컨설팅 지원
 - 선별·매칭된 기술의 SMK(범용 BM형태)와 BM(R&D로드맵 포함) 작성·제공
 - 다각적(온오프라인)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업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매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이전 지원
- (테크비즈파트너링) '전북특구 특화분야 기업과 공공기술의 만남'을 위해 테크비즈파트너링을 기획하고, 실행내용을 지원

* 유관기관(TP 등)과 연계하여 기술공급지원, 기술홍보,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등 자율제안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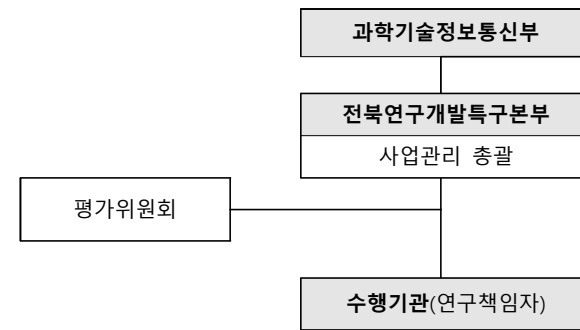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 및 기업 발굴 등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술이전·출자 지원, 전북특구 공급기술 네트워크 운영, BM 작성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 '21.04.07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3.24 ~ '21.04.07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1.4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 전복특구 이해도와 사업추진 전략, 사전 준비정도	25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15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업무분장,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특구 타사업과의 연계 전략	15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5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개발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사업계획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4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6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명서류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서식 3호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2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전략적 기술이전·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 매칭·설립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40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최대 200백만원 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법인
- ③ 특허법인 또는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법인(기술거래기관 이외의 민간법인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3건 이상 보유)
- ④ 산업자원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명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의사결정권을 갖는 이사급 이상 임원으로 참여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율 100%인 전담인력이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

- * 선정되는 기관은 전북특구본부 기술이전업무 지원을 위한 현지 업무협력 등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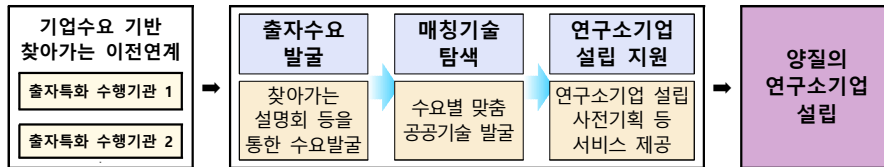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기획 설립) 전북특구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기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출자 가능한 공공기술에 대한 분석·매칭 기술마케팅, BM 등 기술사업화 이전·출자 연계 지원

< '21년도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지원사업(안) >



- (설립주체 협력) 전북특구 내외 공공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특구내외 우수기술의 중·대형 기술이전·출자 추진
- (우량 연구소기업 설립)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연구소기업을 기획·설립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 (육성사업 연계)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특구 육성사업 연계(투·융자, 수출 등)를 통한 기업 후속성장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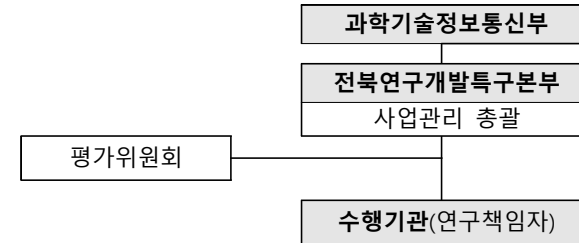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 및 기업 발굴 등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화 및 연구소기업 출자 유망기술 발굴, 수요기업과 매칭, 기술이전/출자 지원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 '21.04.07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3.24 ~ '21.04.07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1.4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25
	수행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및 기술이전 실적	15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15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5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명서류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 3호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3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전북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지역성장 네트워크”와 “기술사업화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총 3개 분과 운영 및 연계·협력 성과 창출
- * 전북특구 산·학·연·관 혁신주체(창업기업, 특화기업, 지원기관, 기술·금융전문가 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1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각 수행기관별 컨소시엄 구성 가능)

분 야	① 지역성장 네트워크		②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전북특구육성자문단	첨단기술기업분과	기술금융분과
지원규모	최대 40백만원 이내 (1개 기관)		최대 70백만원 내외 (1개 기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해당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사업기간은 조정 가능

□ 신청자격 : 산·학·연 네트워킹 운영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기업

* 기업협의체, 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정책연구 전문기관, 대학교 등

□ 수행기관 수행내용

- 네트워크 분과별 구성* 및 운영, 콘텐츠 기획 등

* 전북특구육성자문단 / 기술금융분과 : 既 구축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구성원 추가 가능 / ** 첨단기술기업분과 : 전북특구 첨단기술기업을 기준으로 운영

○ 네트워크 분과별 운영, 성과 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등

< '21년도 전북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안) >

구 분	참여대상	주요내용	주요지표	비고
① 지역성장 네트워크	①전북특구 육성자문단	지자체, 출연(연), 대학교, 기업협회, 유관기관 등	전북특구 상생형 동반성장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지원	40 백만원 이내
	②첨단기술 기업 분과*	전북특구 첨단기술기업, 전북특구기업, 첨단기술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사업 수행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첨단기술기업간 네트워크	
②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	③기술금융 분과	특구기업, VC, AC, 투자, 금융기관 등	기업 IR 및 투자자-피투자자간 투자IR, 투자상 및 네트워크 지원	70 백만원 내외

* 첨단기술기업 분과는 「첨단기술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지정 사업」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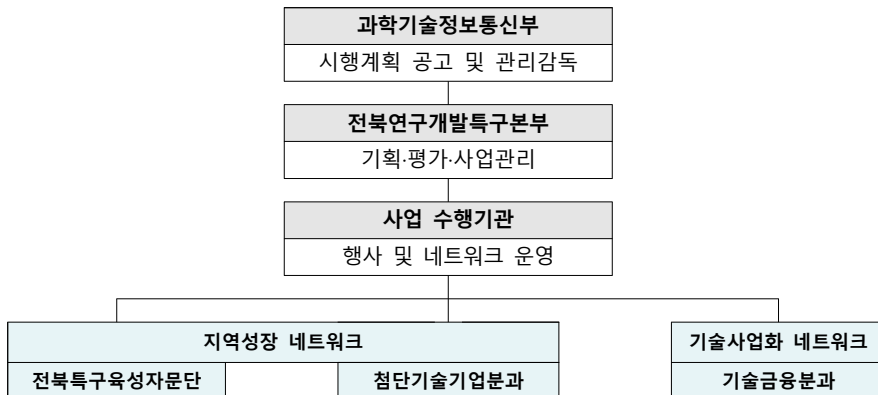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03.08 ~ '21.04.30	⇒	사업신청 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21.04.16 ~ '21.04.30.	⇒	선정평가(사전검토 포함)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5월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5월중	⇒	사업수행 사업 수행기관 협약기간	⇒	최종평가 및 정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 종료후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수행역량 및 사업실적	수행기관(참여인력 포함)의 수행역량 및 준비정도	15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15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및 타당성	20
운영계획 및 성공가능성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효율성	10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30(금)
- 접수기간 : 2021. 04. 16(금), 9:00 ~ 2021. 04. 30(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19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합의동의서		서식 3호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 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기술사업화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기획경영팀	이상민 연구원	063-905-9743	bestsm0227@innopolis.or.kr	네트워크 사업 신청 문의 (지역성장 네트워크)
기술사업화팀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네트워크 사업 신청 문의 (기술금융분과)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4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기술이전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뉴딜, 재난·안전 등 정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861백만원

-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기술이전R&BD, BM연계형R&BD 연구소기업 R&BD) 사업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지원과제

구 분	< 신규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공고기간	2021년 03월 05일(금) ~ 2021년 04월 14일(수),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등(TRL 5~)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신규지원과제 신청 기업은 차년도(2022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희망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해야 함 ②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는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신규지원과제와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20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대상)

구 분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0년 기술이전 R&BD 신규지원과제 수행 기관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추후 별도공고 예정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에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한함 ② 2020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후속고도화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후속고도화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지원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 지원 과제	· 전북특구 소재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특구 내 기업(A형)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특구 내 기업(B형) · 전북특구 소재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지역 소재기업(C형)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협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2020년 기술이전 R&BD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 선정 당시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2020년 기술이전 R&BD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과제 :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과제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름

-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준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 기관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효율(%)

구 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효 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과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 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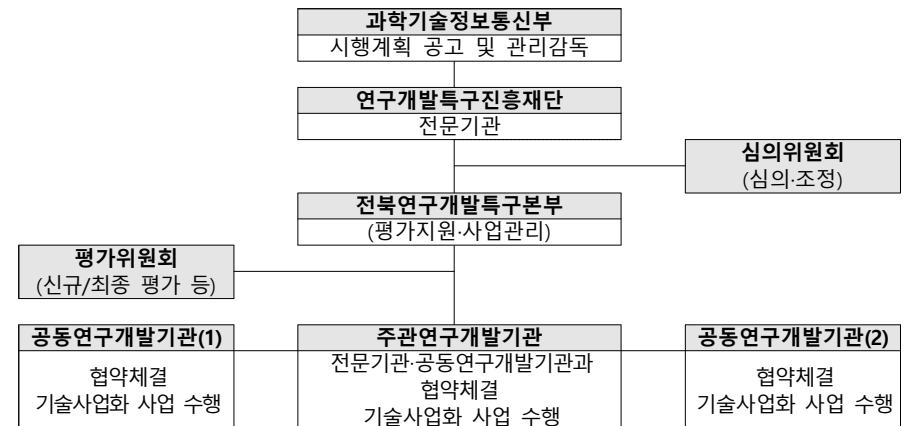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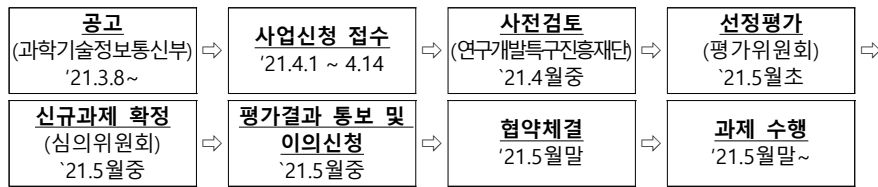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신규 지원과제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후속고도화지원과제」의 경우 '20년 지원한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일정은 향후 추가공고 추진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3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30
사업화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30
사회적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신규지원과제에 한함) : 총 3점 한도

-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판정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첨단기술기업 (3점)
- 전북특구 소재 기업이 전북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를 지원함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규 지원과제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 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기술이전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신규 지원과제 : 2021. 04. 01(목) ~ 2021. 04. 14(수), 15:00까지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향후 추가공고를 통한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신청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7년~'19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2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서식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서식8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4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5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BM 연계형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사업으로 수립된 Business Model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뉴딜, 재난·안전 등 정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861백만원

-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기술이전R&BD, BM연계형R&BD 연구소기업 R&BD) 사업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지원과제

구 분	< 신규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공고기간	2021년 03월 05일(금) ~ 2021년 04월 14일(수),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등(TRL 5~)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신규지원과제 신청 기업은 차년도(2022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희망 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해야 함 ②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신규지원과제 및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신규지원과제 와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20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대상)

구 분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0년 BM연계 R&BD 신규지원과제 수행 기관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추후 별도공고 예정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에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한함 ② 2020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전년도 신규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전년도 신규지원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 지원 과제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A → 기업 A/C형 공공연구기관 B → 기업 B형 · 전북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BM(Business Model)* 수립이 완료된 전북특구 내 · 전북지역 기업(A/C형) · 전북특구 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BM(Business Model)* 수립이 완료된 전북특구 내 기업(B형) * BM(Business model) : 전북특구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사업, 수요자 중심 기술 찾기 플랫폼 사업을 통해 발간된 BM보고서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2020년 BM연계 R&BD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 선정 당시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2020년 BM연계 R&BD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 1단계 과제 :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과제

- **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사업, 수요자 중심 기술찾기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BM리스트 참조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른

-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준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 기관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효율(%)

구 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 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 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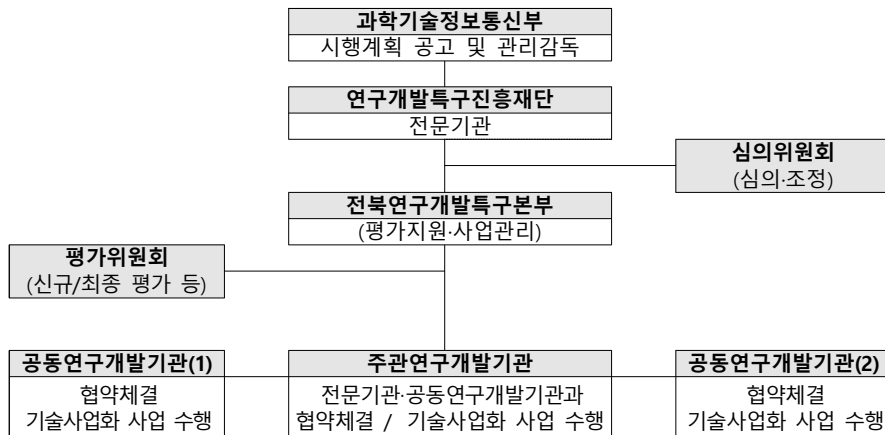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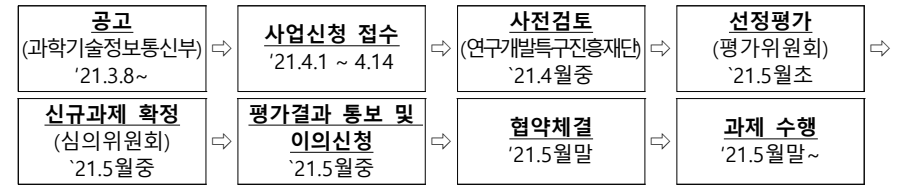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신규 지원과제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후속고도화지원과제」의 경우 ‘20년 지원한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일정은 향후 추가공고 추진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3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30
사업화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30
사회적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을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를 지원함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규 지원과제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 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기술이전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신규 지원과제 : 2021. 04. 01(목) ~ 2021. 04. 14(수), 15:00까지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향후 추가공고를 통한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신청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제형 홈텍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2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서식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4	BM(Business Model) 보고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6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연구소기업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뉴딜, 재난·안전 등 정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861백만원

-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사업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지원과제

구 분	< 신규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공고기간	2021년 03월 05일(금) ~ 2021년 04월 14일(수),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등(TRL 5~)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신규지원과제 신청 기업은 차년도(2022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희망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해야 함 ②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신규지원과제 및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신규지원과제와 후속고도화지원과제 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20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대상)

구 분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지원규모	연간 3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0년 연구소기업 R&BD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추후 별도공고 예정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한함 ② 2020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후속고도화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후속고도화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지원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구 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 지원 과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2020년 연구소기업 R&BD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선정 당시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연구소기업 R&BD 신규지원과제 사업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과제 :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과제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준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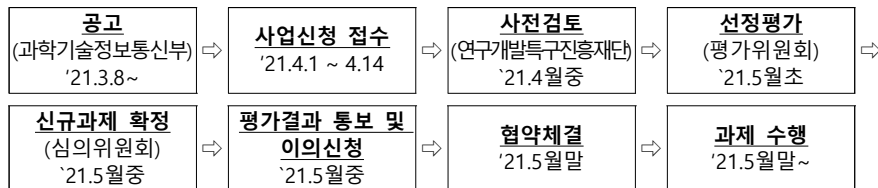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신규 지원과제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후속고도화지원과제」의 경우 '20년 지원한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일정은 향후 추가공고 추진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기술기여도	3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30
사업화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30
사회적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를 지원함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규 지원과제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 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기술이전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신규 지원과제 : 2021. 04. 01(목) ~ 2021. 04. 14(수), 15:00까지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향후 추가공고를 통한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신청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1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7년~'19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9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3	연구소기업 등록증(등록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7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질적 성장 고도화 추진

□ 사업내용

-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진단, 멘토링 등을 통해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애로해결 및 질적 성장기반 마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5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교육·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2개 기관 이내 컨소시엄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수행내용

- 교육·기업조사 역량진단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의 애로해결, 역량강화 등 종합지원
 - (기업진단) 기업 역량, 사업화 준비도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지원 방향 수립 등 종합분석 및 기업별 현황 체계적 관리
 -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구 초기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준비정도 및 기업별 수요(사업화일반, 투자IR 등)에 따라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애로해결 지원) 기업진단과 병행하여 기업별 애로해결(타사업 연계, 시장자료 제공, 전문가 컨설팅, 홍보자료, 입점지원 등) 종합지원
-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기업 간 정보 및 공동협력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등
- (기 타)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 조사(경영현황·수익금,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 '21.04.07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3.24 ~ '21.04.07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1.4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2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 추진방안 및 내용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50)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10
	전북특구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10
	기업역량 개선 관련 실적 및 경험	20
추진일정, 성공가능성 (30)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15
	사업 추진일정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15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제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8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9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10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호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7	ljk400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8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의 역량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의 사업화·제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등)를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313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지원대상 :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예정인 연구소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소기업은 제외
- ** 등록 예정 연구소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인허가, 판로개척 등 연구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예시)
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시제품 현장실험 등
판로개척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홍보 영상,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망상품 기획, 수출자료제작 등
기 타	IR자료 제작, 지재권 취득 및 선행기술조사, 사업화 아이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중견기업 10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 (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수시 (1차:~5.31, 2차:~8.31)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1차 - '21.6월중 (2차 - '21.9월중)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평가후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후	- 결과평가, 사업비 정산 등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2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0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내부역량, 추진전략 등 (50)	연구소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20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20
	연구소기업의 출자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추진일정, 성공가능성 (30)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 성과	15
	사업추진의 추진일정 및 성공가능성	15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에 관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에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1차 접수마감 : 2021. 05. 31(월), 15:00까지
 - * 1차 접수 마감 후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과제 선정 현황에 따라 정부 출연금이 조기소진 되는 경우 2차 접수는 생략함
 - 2차 접수마감 : 2021. 08. 31(화), 15:00까지(접수 전 담당자 문의 요망)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신청, 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사업자등록증은 원본대조필
4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호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10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11	연구소기업 등록증 (등록신청서)		연구소기업 등록 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전문수행기관 부적격으로 탈락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9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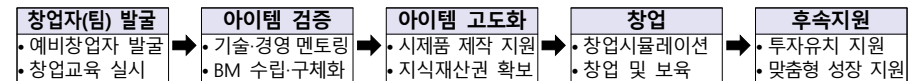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전북특구 거점 대학의 역량 및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문화 확산과 성장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 전북특구 내 소재하는 거점대학을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선정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주기 지원

<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지원 프로세스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5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대학 선정, 연간 최대 350백만원 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최대 2년 이내 협약을 실시하며, 연 단위로 정부출연금이 지급됨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전북특구 소재 대학 중 신청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구성하는 사업단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산학협력단

-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본 사업 창업 기업 및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등을 위한 전용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제안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장, 관련 학부(학과) 소속 참여교수진, 행정인력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사업단 구성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타 대학, 출연(연), 민간법인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수행내용

- 대학기술 및 자원을 활용하여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등 기술창업 및 성장지원 활동 제반비용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사업단)에 맞는 상세 운영방안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창업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활동을 전북특구 인프라(TBC 등) 및 사업과 연계·활용하여 추진

<세부 추진 프로그램(안)>

- ◆ **(아이디어 발굴)** 대학생 및 일반인의 아이디어, 유관기관 등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자 정기/수시 모집 및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
- ◆ **(창업아이템 검증 및 보육, 종합지원)** 예비창업자의 모의 기술사업화 실습과 엔젤투자자 및 전·현직 대기업 임원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 및 매칭,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종합지원
- ◆ **(공공기술 연계)** 예비창업자와 공공기술(대학내 연구성과 등)을 연계하여 특구내 연구소 기업 설립 및 기술이전 지원
- ◆ **(창업 및 투자연계)** 창업 외 엔젤투자설명회 등 IR 개최 및 지역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투자 연계
- ◆ **(성장지원)**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및 오픈형 창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하여 창업자에 대한 후속 성장 지원체계 마련
- ◆ **(공동 프로그램 기획)** 특구육성사업, 창업관련 유관기관, 이노캠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 **(특성화 모델 발굴)** 대학교별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현안 해결, Post 코로나, 그린·디지털 뉴딜 부합 등 차별화 창업 모델 발굴 (학교별 자율적으로 설계 및 기획하여 제안)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민간부담금(현물) 비율은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간접비 비율은 5% 이내 산정
-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및 연구원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 인정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 '21.04.07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3.24 ~ '21.04.07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1.4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중간 점검 및 차년도 사업수행	'22.4월	- 연차보고서/진행 상황 점검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최종평가 및 정산	'23.5월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지원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 체계성, 사업계획 등 업무 수행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심층 평가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30)	지원 필요성 및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10
	제안기관 상세 프로그램 추진목표 및 체계의 적절성(최종목표 등)	20
프로그램 체계성(55)	창업자(연구소기업 포함) 발굴 및 선정 계획, 성과창출 전략 등 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20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자체사업, 타정부사업 연계 등)	15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10
	연구소기업 설립 및 투자 유치 방안의 적절성	10
기대효과(15)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15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신청·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8	과제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 3호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10	현물출자 약약서		서식 5호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7	ljk4002@innopolis.or.kr

6. 기타 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후 5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사업단)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현황, 창업기업 정보를 제공해야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희망하는 수행(협약)기간을 기재 (최대 2년 이내)하여야 하며,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실시
* 2차년도 사업착수전 진행상황 점검 및 연차보고서 별도 접수 예정

10 액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 투자 및 교육,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의 성장 촉진

□ 사업내용

-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전북특구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직접투자/후속투자 연계 등 종합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40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최대 200백만원 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 기능을 갖춘 전문법인(컨소시엄 구성 가능)

- * 기존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조합, 클럽) 등으로 이를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종합지원
 - * 액셀러레이터의 전문가(멘토링) 활동 비용, 교육 운영경비, 국내외 VC 및 엔젤투자자 대상 IR발표 등 스타트업의 선발·교육·투자유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지원규모는 수행기관이 제안한 운영규모 및 교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멘토와 투자를 위한 파트너(엔젤, VC 등) 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투자연계, 직접투자 추진
- 액셀러레이팅 기법, 시장진출 전략, 성공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성과확산

<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세스(안) >

창업 아이템 발굴	先투자 지원	보육·성장 지원	후속투자 연계 (Demo Day 등)
·예비창업자, 우수인력, 기업 발굴 ·공공기술, 연구자	⇒ ·엔젤, VC,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연계	⇒ ·창업 및 보육·성장 지원 (경영기술 자문,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창업 등)	⇒ ·개발상품/서비스 시연 ·투자유치의 장 기획

□ 액셀러레이터 수행 조건

구 분	세부 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 관리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
프로그램	· 1년에 10개 이상의 예비창업자(팀)를 발굴하여 집중적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발표 및 아이디어 공유, 선배기업인 멘토링 등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참여하는 창업 준비 활동을 포함 · 액셀러레이팅 계획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역할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엔젤투자자,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시 등(ex. 크라우드 펀딩, 보육·멘토링 등)
투자	· 창업자(팀)의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을 보유 · 전북특구에 즉시 선투자 가능한 펀드(자체/연계)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계획 제시 ·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의 투자연계 및 창업시 연구소 기업 설립 유도 · 기업의 글로벌 진출 위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사업 발굴 및 지원 등

- * 상기 목표는 필수 성과목표이며, 수행조건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등

-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민간부담(현물),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사업 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21.04.07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3.24 ~'21.04.07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21.4월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 액셀러레이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합성	20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체계성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 강사,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20
	· 예비창업자(팀) 및 기업발굴 계획의 적절성	20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0
스타트업 및 투자계획 적절성	· 멘토링 및 네트워킹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20
	· 창업자 운영관리 및 후속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20
	· 성과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20
스타트업 및 투자계획 적절성	· 창업팀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10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가능 연계 방법의 적절성	20
	· 엔젤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지원	2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 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6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호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9	현물출자 협약서		서식 5호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1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첨단기술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 우수제품 시험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 ☐ **(사업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판로개척, 시제품제작, 컨설팅 등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 **(총사업비)** 100백만원
- ☐ **(지원규모)** 기업당 50백만원 내외 지원
 -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증감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 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북특구 첨단기술기업
- ☐ **(지원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인허가, 판로개척 등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예시)
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시제품 현장실험 등
판로개척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홍보 영상,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망상품 기획, 수출자료제작 등
기 타	IR자료 제작, 지재권 취득 및 선행기술조사, 사업화 아이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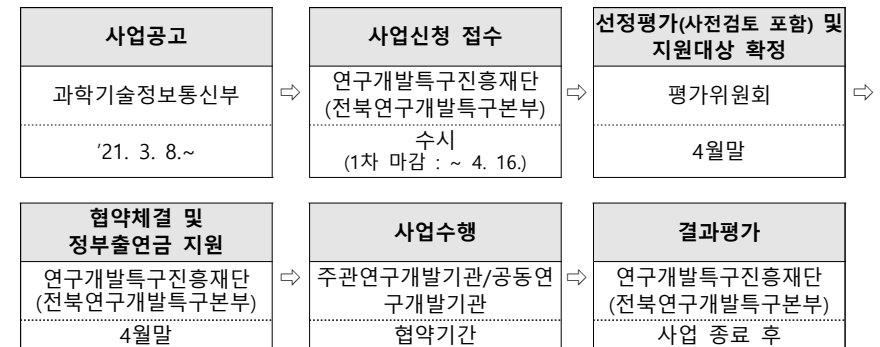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 (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보고

☐ 추진절차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5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내부역량, 추진전략 등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20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20
기대성과 성공가능성 등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20
	•사업일정 및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접수이후 접수건수, 지원예산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개발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3. 8(월) ~ 2021. 4. 16(금)
- 접수기간 : 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 1차 접수마감 : 2021. 4. 16(금), 15:00까지
 - *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평가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신청, 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3호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11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상민 선임연구원	063-905-9743	bestsm0227@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수행기관 부적격으로 탈락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2 전통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 전통 제조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기술개선, 첨단기술 융·복합 신사업 아이템 발굴,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 제조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기술 고도화(R&D),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역량,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한 맞춤형 전략* 설계 지원

* 시장진입, 마케팅 등 사업화전략, IP, R&D 등 기술전략 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00백만원 / 수행기관 1개 선정

* 수혜기업은 2개 이내로 선정 (수혜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 별도 부담)

□ 지원대상

1. 수행기관

- (지원자격) 해당 사업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 컨설팅 기관*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 관련 실적을 보유한 기관

- (수행내용) 기업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여 특구내 제조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아이템 발굴 지원

-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자원분석, 산업트렌드분석, 유사기업 벤치마킹, 사업화/기술전략 분석 등을 통해 신사업 아이템 도출

- 기업별 요구사항 분석을 토대로 사업다각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2. 수혜기업

- **(지원자격)** 전북특구내 소재한 제조기반 기업으로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이 필요하고 신사업 전환을 위한 자체 투자여력을 보유한 기업
 - * 특구재단은 별도 절차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2개사 이내) / 수혜기업은 수행기관과 별도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예정
- **(지원내용)** 선정된 수행기관이 대내·외 환경변화의 대응을 위해 기업 요구사항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형 신사업 전환 전략 지원
 - * 수혜기업은 기업현황 등 정보제공, 내부역량 분석, 사업전략 수립 적극 지원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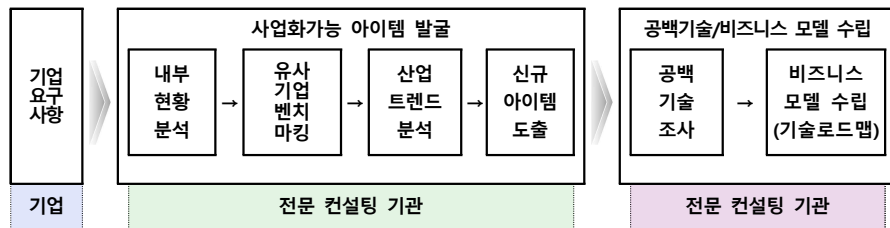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수행내용

- 기업의 요구사항·내부현황 분석, 국내·외 유사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유망 사업영역 선정 후 산업트렌드 분석을 통한 아이템 도출
- 각 아이템별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성 심층분석을 통해 공백(공공) 기술을 제시, 최우선 사업아이템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전통제조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 사업 프로세스(안) >



- **(내부현황 분석)** 기업 내부의 다양한 인적, 물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기업의 핵심역량(강·약점) 분석

- **(유사기업 벤치마킹)** 경쟁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및 신규 아이템의 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 **(산업트렌드 분석)** 기존 자료, 추세에 근거하여 외부환경 변화 및 미래시장 변화의 모습을 투사
- **(신규아이템 도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5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 도출
- **(공백기술조사 및 BM수립)** 기술분포맵 등을 이용하여 공공연구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공백 영역에서의 아이템 발굴 및 BM 수립
 -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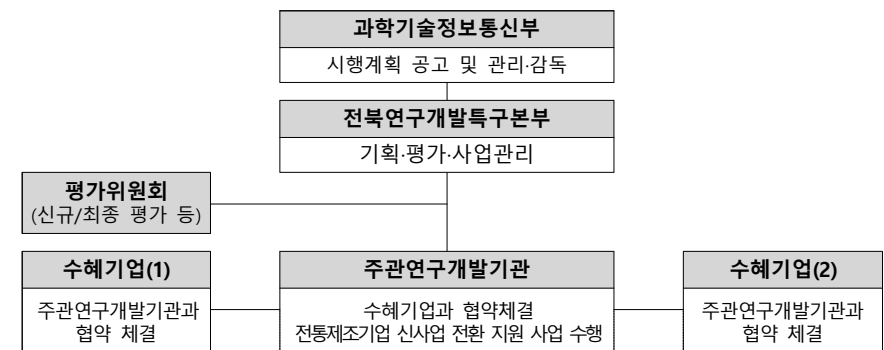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없음
- (수혜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부담
 - * 예시1) 수혜기업 1개 선정시 : 정부출연금 100백만원의 10%인 10백만원 이상 현금 부담
 - * 예시2) 수혜기업 2개 선정시 : 정부출연금 50백만원의 10%인 5백만원 이상 현금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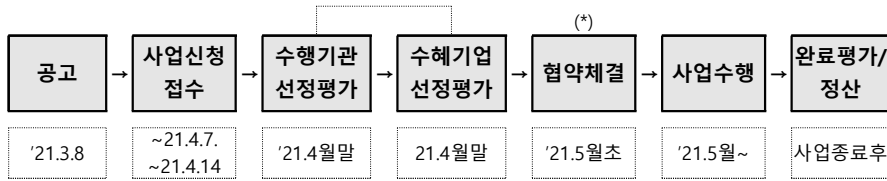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및 일정



* 협약은 특구재단과 수행기관이 체결하며, 수혜기업은 수행기관과 독립적 협약 체결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수행기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적의 부합성 (40점)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15
사업수행능력 (50점)	-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정도(기술, 시장DB등)	15
	-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성과	10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역량	15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10
사후관리(10점)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수혜기업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적의 부합성 (40점)	-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15
	-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여부	15
	- 현재아이템(또는 이전기술)의 사업성	10
지원의 효과성 (60점)	- 신규사업 추진 의지(기업가 정신)	15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역량(사업 및 보유 인력)	15
	- 소요자금 조달 계획 및 재무건전성(자체투자 가능여부)	15
	- 신규사업 추진일정	5
	- 사업화 성공 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수행기관 >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수혜기업 >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14(수)
- 접수기간 : 2021. 03. 31(수), 9:00 ~ 2021. 04. 14(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사업명,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기재	전자파일 (PDF) 업로드	모든기관 제출
2	사업계획서(수혜기관용/수혜기업용)		모든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모든기관 제출
4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19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년도 기준 (비영리기관 제외)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호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10	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도 / 서식5호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3 기술사업화기업 후속성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사업화 장애/성장정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 극대화 및 우수 성장사례 창출

□ 사업내용

- 성공적인 시장진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15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수행기관 1개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전북특구 기술사업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판로/인증 등 분야별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적인 추진(사업화제품에 대한 매출발생, 양산화 등)이 필요한 전북특구내 기술사업화 기업(기술이전사업화 추진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전북특구 사업화기업, 첨단기술기업 대상 사업화 장애요인, 경영애로 수요발굴	기업별 애로분석 및 솔루션 도출	맞춤형별 애로해결 지원 (기술/판로/자금/기타 등)
설문조사, 유관기관 추천 등	기업현황 및 수요분석(1:1 인터뷰 등), 솔루션 진단	컨설팅, 전문가연계, 프로그램 운영, 자료조사, 인증지원 등

- (수요발굴) 본격적인 사업화 추진(사업화제품 개발, 양산, 판매 등), 기업개선, 혁신성장 등 솔루션이 필요한 특구내 사업화 기업 발굴

- (기업진단/분석)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및 사업화역량·문제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지원전략 마련

-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 ◆ (기술) 공공기술 추가매칭, 사업화전략 재설계, 지재권 방어전략 수립 지원 등
- ◆ (판로) 국내 온라인 마켓 진입 지원, 구매상담회 개최,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등
- ◆ (자금) 투자IR 자료 보완, 투자처 연계,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PT 지원 등
- ◆ (기타) 기술/시험인증 컨설팅, 시장조사, 기타 기업 유용정보 제공 등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 (연계지원) 특구육성사업(사업화과제, 시제품제작, 투자연계 등) 및 타 기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후속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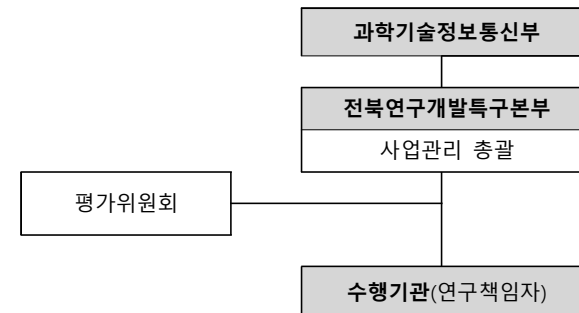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사업 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성과관리 등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21.04.07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3.24 ~'21.04.07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21.4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연차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 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5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준비 정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체계 등	20
	○ 사업 추진방안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의 타당성, 업무분장(R&R)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추진계획 실현가능성 등	20
사업수행능력(35)	○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역량 - 수행기관 전문성, 수행조직/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25
	○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성과	10
사업운영, 사후관리(15)	○ 세부 추진일정, 사후관리방안 적절성 및 사업추진 성공가능성	15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07(수)
- 접수기간 : 2021. 03. 24(수), 9:00 ~ 2021. 04. 07(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19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6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호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 컨소시엄으로 추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테크비즈센터 내 교류협력공간 운영을 통해 혁신주체간 협력, 기술창업 촉진,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창업허브 역할 강화
- * 일반인,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공간 운영

□ 사업내용

- 교류협력공간 관리·운영 및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네트워킹, 투자콘서트, Meet-up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전북테크비즈센터 2층 교류협력공간 운영시설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2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교류협력 공간 운영, 교육·기업진단, 컨설팅,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 개선 등 교류협력공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커뮤니티 매니저) 1명 상주 필수

□ 세부사업내용

- (시설 운영·관리) 교류협력공간, 비즈 라운지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및 환경구축, 기자재 관리, 안전관리 등
-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보교류, 협업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 데이, 네트워킹, 비즈니스 구체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따른 온·오프라인 간 유기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우수 창업아이디어 공모 및 포상,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해커톤, 성장전략 워크숍, 투자콘서트 등
- (네트워킹 프로그램) 특구 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Meet-up day, 입주기업 성과공유 및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등
- (상시컨설팅) 경영, 법률, IP, 세무 등 상시 컨설팅 및 사업화연계 지원
- (홍보)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등 교류협력공간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일체
- (연계협력) 지역내 창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활성화 기획
- (기술창업 DB 제공)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술분야별 시장정보, 평가 정보, 특허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 (이용자 관리) 교류협력공간 이용자 출입관리, 이용현황 통계분석, 만족도조사 등 이용편의 개선
- (기타)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평가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03.08 ~'21.04.3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1.04.16 ~'21.04.30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1.5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지원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 체계성, 사업계획 등 업무 수행의 적합성, 추진일정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층 평가

*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과제인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 전문성 (30)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보유 수준	10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추진전략, 사업실적 등 적정성 (50)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 등 추진전략	20
	타사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계획의 적정성	10
추진일정, 실현가능성(20)	회원관리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 및 비중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03. 08(월) ~ 2021. 04. 30(금)
- 접수기간 : 2021. 04. 16(금), 9:00 ~ 2021. 04. 30(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신청, 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8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호 / 모든기관 날인
9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2호 / 모든기관 제출
10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동동의서		서식 3호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 모든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7	lj400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